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

- 재정합의결정을 거칠 경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될 수 있는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절차를 규정함
-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재정합의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된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도록 함

◇주요내용

- 법원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(제3조의2제1항 신설)
-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의 확인절차에 관한 「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, 제4조를 안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확인 절차에 각각 준용함(제3조의2제2항 전단 신설)
- 이 경우 국민참여재판 의사 번복의 종기인 「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의 “공판준비기일”과 “제1회 공판기일”은 “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공판준비기일”과 “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”로 봄(제3조의2제2항 후단 신설)
-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하되, 안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 경우에는 송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함(제5조제1항)
- 안 제5조제1항 본문의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 확인서를 “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”에 제출하도록 함(제5조제2항) <법원행정처 제공>

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15년 6월 2일

대 법 원 장 양 승 태 인

●대법원규칙 제2603호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1조의2(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) 법 제293조의4제4항제4호에 규정된 “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
1.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,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, 그 밖의 소명자료

- 2.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정관,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, 그 밖의 소명자료
  - 3.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
  - 4.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
-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1조의3(간이조사위원 등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) ① 법 제293조의7제2항에 따른 간이조사위원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법 제90조에 따른 재산가액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공정·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목의 방법 중 채무자의 업종 및 영업특성에 비추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.

가. 회계장부의 검토

나. 문서의 열람

다. 자산의 실사

라. 채무자 임직원에게 대한 면담

마. 외부자료의 검색

바. 과거 영업실적을 통한 추세의 분석

사. 동종업계의 영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분석

- 2. 법 제91조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는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다. 이 경우 재산의 규모와 재산 내역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을 통합할 수 있다.

- 3.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채무자의 회생계획 또는 회생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요지만을 보고할 수 있다.

- 4.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, 채무자의 영업 전망, 거래처의 유지 가능성, 공익채권의 규모, 운영자금의 조달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만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은 법 제293조의7제3항에 따른 관리인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- 2015년 7월 1일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자 함

◇주요내용

- 간이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채권자목록,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,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외에 필요한 서류를 정함(제71조의2 신설)
- 간이조사위원과 관리인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을 정함(제71조의3 신설)

<법원행정처 제공>